

(앞쪽)

지켜야 할 사항

1.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.
2.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3.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시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에는 20%(식대제외),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.
5.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쳤거나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.
6. 이 증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고치지 마시고 이를 공단에 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.

건강한 국민, 더불어 사는 사회



190mm×127mm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